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종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